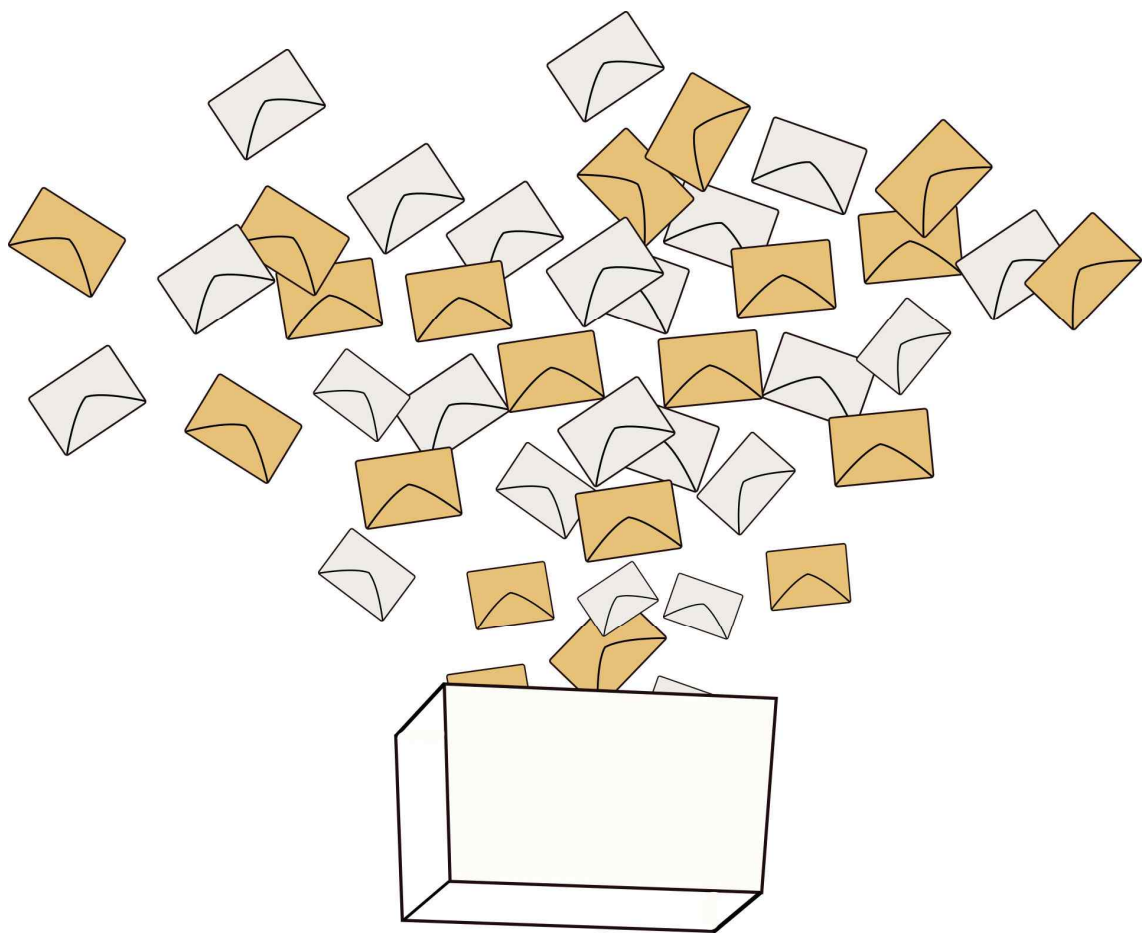


교직원 맞춤형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017.1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

일러두기

- ◆ 이 사례집은 교직원의 정치관계법 이해를 돕고자 교직원이 평소 궁금해 왔던 사안과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 ◆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칙 등을 기준(2017. 11. 1.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례집은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외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계 법령·규칙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용어의 표기
 - 「공직선거법」 ⇨ '법', '선거법' 또는 '공선법'으로 표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자법'으로 표기

차례

교직원 맞춤형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1장 선거제도 일반	1
제2장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15
제3장 선거운동 금지 등	22
제4장 기부행위 제한·금지	38
제5장 교직원의 정치활동	58
제6장 기타 학생 교육 등 관련 주의사항	66
부 록	74



제1장 선거제도 일반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① 법규요약(법 § 15, 16, 18, 19, 37)

□ 선거권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 19세 이상의 국민

※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선거권 : 19세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피선거권

- 대통령의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 교육감의 피선거권
 -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이 있는 사람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음.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8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선거일 전 22일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
- 작성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작성

② Q&A

【Q】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교육적인 학교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A】 「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에서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의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구·투표구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언제인지요?

【A】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8일이며, 그 외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8. 5. 22.

【Q】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에 홍성군 홍성읍 제1투표구에서 아산시 온양1동 제3투표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투표장소는 어디인가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홍성읍 제1투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아산시 온양1동 제3투표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전 주민등록지인 홍성읍 제1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홍성읍 제1투표구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라도 전 주민등록지의 투표소까지 가실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8. 6. 8. ~ 6. 9.

3 주요 사례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로 계속하여 6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음.
-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민사법원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은 선거권이 없음. 그러나 한정후견인이나 경제적 파탄으로 변제불능상태에 빠진 파산자 등은 선거권이 있음.
 - ☞ 2011. 3. 7. 민법 개정[시행 2013. 7. 1.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으로 한정치산자·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민법」 제9조 제1항), 종전의 금치산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다만, 법률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을 인용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을, 그리고 한정치산을 인용하는 때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민법 부칙 제3조).
- 두 가지 이상의 선거범죄로 각각 기소되어 각각 일백만원 미만(합산액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의 등재가 선거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4 판례

- ① 지방선거 피선거권에 거주요건을 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를 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연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거나 지역과 사회적·지리적 이해관계가 있어 당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임(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376 결정 참조).
- ②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 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참조).
- ③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선거법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72. 9. 26. 선고 71수6 판결 참조).

2. 예비후보자

① 법규요약(법 §60의2, §60의3, §60의4)

□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 법 제57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한함.)
- 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자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
 - ※ 다른 법률에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경우
 - 국회의원 제명 시 해당 보궐선거의 입후보제한(국회법 §164)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함(지방자치법 §95, 교자법 §21)
 - 주민소환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자의 해당 보궐선거의 후보제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3)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② Q&A

【Q】 예비후보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제도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교육감선거 포함)의 경우 13일 동안]이 짧아 현역 선출직공무원과 정치 신인과의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별 선임 가능(교육감선거는 5인)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 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 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 는 것은 8회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선거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은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등 의례 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 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Q】 각종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 이후 예비후보자가 학부모가 참석하는 교내 행사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 경우 행사의 평온함을 위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요?

【A】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함을 비치·살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아래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특정 예비후보자만 제한하는 등 예비후보자간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법 §60의3)

□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배부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호별방문에 이르는 장소

2.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법 §93)

□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의 경우와 같음.

※ 다만,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보고,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으로 봄.

□ 배부금지장소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하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미준용 되므로 교육감의 축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Q】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에 관하여 기간 및 이 행위가 지방선거 출마 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 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일반유권자와의 대담형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방송에 의하여 송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4 판례

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배우자가 종교시설인 ‘수국사’의 대웅전, 일주문 앞 길 등지에서 위 수국사를 찾은 선거구민들에게 위 공소의 1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함 70여 매를 배부하면서 위 공소의 1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참조).

②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제4호)와 같은 사실행위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2호)처럼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를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위 제6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점, 위 제6호에 따른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타인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호에 따른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793 판결 참조).

③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甲이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한 행위는 같은 법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3279 판결 참조).

☞ 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 시 상고기각

3. 기탁금

① 법규요약(§ 56, § 57)

□ 선거별 후보자등록신청 시 납부할 기탁금

- 대통령선거 : 3억원
- 국회의원선거 : 1천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 300만원
-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 200만원

□ 기탁금 반환 요건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
- 기탁금 반환 시기 :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Q&A

[Q] 선거법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기탁금액은 기탁금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는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 전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도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A]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선거 기탁금에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득표수의 계산결과가 소수점인 117.25로 나온 경우 117표를 득표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 후보자의 실제 득표수는 질의내용과 같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는 없으므로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118표 이상 득표를 하여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결정

- ①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마79 결정 참조).
- ②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입후보예정자가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지나치게 그 반환기준이 높아 진지하게 입후보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를 가짐(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42 결정 참조).

4. 사전투표

1] 법규요약(법§ 148, 158)

- 사전투표기간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8. 6. 8. ~ 6. 9.
-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
 - 재·보궐선거 :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
-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작성방법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교부

2] Q&A

[Q]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본인이 편리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Q】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투표구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로 작성·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Q】 선거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는 경우 이중투표가 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있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중투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Q】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사전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할 수 있는지요?

【A】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사전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5.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법규요약(법§ 266)

□ 제한 대상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

□ 제한 주체

- 제한 대상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제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서 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

□ 제한 기간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제한 대상 공직

-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2 Q&A

【Q】 교육직 공무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는지요?

【A】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직공무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되고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Q】 다른 법률과 다르게 교육공무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관련선거의 폐해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Q】 교육공무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반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A】 선거범죄로 인하여 공무담임이 제한되었던 사람이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되는 것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 사면법 제5조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1. 선거중립 의무

① 법규요약(법§ 9)

-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② Q&A

- 【Q】**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한 후보자 추천장에 서명하여도 되는지요?
- 【A】** 정치적 중립 여부를 불문하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무소속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Q】** 교직원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시국강연회에 참석하여 질의 및 청취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요?
- 【A】**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한 시국강연회에 참석하여 질의 및 청취 하는 것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행위의 동기·내용·시기·장소 및 상대방 등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또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Q】** 공무원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들(사드배치, 무상급식, 담뱃값 인하) 등에 관하여 사적인 모임 등에서 담소를 나누며 의견을 찬성 또는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나요?
- 【A】**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격려 또는 항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요?

【A】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격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였을 경우 예외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였을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관례에 따라 단순히 학교 현황 등을 설명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후보 예정자 간에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설명과정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제86조 등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을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전에 지역문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정책세미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4] 현재결정

○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1.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쏠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헌법 제7조제1항의 요청인 것이다.

2. 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각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자유선거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선거원칙은 선출된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의미한다.

3.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정당의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헌법적으로 요청된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제1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연관관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이며, 특히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은...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당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법규요약(법§ 85)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

- 주 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③·④)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개 요

○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

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 참조)

○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참조)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 판단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참조)

3 주요 사례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보조금·교부금 등의 교부, 용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참조)
- 공무원들이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참조)
-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노684 판결 참조)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참조)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6. 8. 23. 선고 2006고합43 판결 참조)

4 판례

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대상 전화선거운동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서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당 예비후보자의 처인바,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10경 ☆☆시 중구에 있는 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일반전화(번호 : 042-000-0000)를 이용하여 위 ○○여고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정○○(16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

녀에게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남편이 ○○당으로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여고 1학년에 재학중인 김○○(1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참조)

②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장전입 권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위 학교 이사장이 2006. 5. 31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전라북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기로 각 마음먹고, 피고인은, 누구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단체 등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06. 3. 31. 16 : ○○경 전북 ◇◇군 소재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이사장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6. 8. 23. 선고 판결 2006고합43 참조)

③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과 강사로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의 처 겸 △△대학교 무용과 교수의 제자인바, 누구든지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2. 5. 하순 일자불상 16 : 00경 △△대학교 □□캠퍼스 무용관 201호 강의실에 위 대학교 무용과 1학년 학생 신○○(여, 18세), 오○○(여, 18세), 2학년 학생 김○○(여, 19세), 윤○○(여, 19세), 문○○(여, 19세), 3학년 학생 박○○, 정○○, 박○○ 등 무용과 학생 약 3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그 학생들을 상대로 “무용과 지도교수의 남편이 ○○시장 후보자로 출마를 하였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위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위 당선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위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해 6. 1부터 6. 12까지 ○○시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시민들에게 “기호 1번 한나라당 ○○시장 후보자 윤○○를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화하게 하는 등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위 신○○ 등을 포함한 위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3. 1. 9. 판결 2002고합769 참조)

제3장 선거운동 금지 등

1.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 58, 59]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참조)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 예 외
 -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Tip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에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음.

2 Q&A

【Q】 후보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 운동내용의 문자가 오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Q】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원·학부모 대상 연수·회의 시 회의장 앞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아닌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지원청 민원실, 도서관 데스크 등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비치한 후 담당 직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선거운동용 명함은 「공직선거법」에서 배부가 허용된 자가 선거운동의 상대방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만 무방할 것이며, 이를 비치하거나 법에서 배부가 허용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 연장자의 선거에 관한 격려사에 화답하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연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후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로(별도 인쇄물 배부 등은 불가) 소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제한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 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시기에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4 판례

-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참조)
-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참조)
- ③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합430 판결 참조)
- ④ 봉사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모임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연을 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노475 판결 참조)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법규요약(법 §60)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참조)
 -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입법 취지

-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임(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결정 참조).

3 Q&A

【Q】 교직원이 개인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이나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규칙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제60조 등의 위헌여부

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이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전인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그런데 국·공립교원과 달리 사립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논의를 원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사립교원이 국·공립교원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그 소속학교의 설립주체와 무관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사회적 책임성과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는 국·공립교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의 지위와 사회보장, 교과과정 등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교육의 개인적·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교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사립교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핌에 있어 별다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결정 참조)

【Q】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교육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직 공무원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직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조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및 교사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가능

【Q】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형제나 친인척이 교육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교직원이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 SNS(Facebook, 트위터, 밴드, 미니홈피 등)를 통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교직원은 행위 시기에 불문하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Q】 교육감이 관할구역 내 음식점에서 식사 후 업주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친필로 서명(직·성명 게재)한 종이를 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와 무관하게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업주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종이에 서명(직·성명 게재)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교육감이 관할구역내 일반 학부모 등 선거구민의 조사에 교육감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교육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교직원 등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위반된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1

피고인은 OO고등학교 교장이고, 위 학교 이사장이 2006. 5. 31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전라북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기로 각 마음먹고, 피고인은, 누구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단체 등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06. 3. 31. 16 : OO경 전북 □□군 소재 OO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이사장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6. 8. 23. 선고 2006고합43 판결 참조)

○ 판례 2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서울 □□구 △△동 소재 사립학교인 서울○○여자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바, 2008. 6. 4. 10:00경 위 서울○○여자중학교 교장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공○○ 후보자를 당선시킬 것을 마음먹고, 각 학년별 학부모 회장인 채○○, 진○○, 최○○을 미리 연락하여 불러 모은 다음 동인들에게 ‘전교조가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학생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현장이 폐쇄해 질 것이다. 현 교육감인 공○○은 학력평가, 교원평가, 수준별 교육도 하고 있으니 공○○이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위 공○○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3. 선고 2009고합64 판결 참조)

○ 판례 3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편집, 복사하여 배부한 ☆☆한국신문의 기사 내용은

운동권 출신 선거 출마자들의 전력·발언록을 게재하고,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거나 간첩사건 등에 연루된 자들이 대거 ○○당 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기사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 관련 기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신문 중 주로 특정 정당에 불리한 일부 기사를 발췌·편집하여 복사하고 이를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출입하는 교회 입구 게시판과 성미통에 게시, 비치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의 공정·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1868 판결 참조).

○ 판례 4

피고인은 ○○도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대학교 출신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원들의 모임인 '△△교우회' 9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2009. 1. 5.경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개최된 '△△교우회' 정기총회 준비이사회에서, 2009. 4. 29.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대학교 출신의 김○○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대학교 사범대학 출신)를 지지하기로 참석자 상호간에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교우회' 회원 전반을 상대로 위 이○○를 지지·추천하고, 나아가 ○○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원을 조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6. 16:31경 △△시 ○○도교육연구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로 위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교육넷'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교 8회 동문인 황○○ 등 '△△교우회' 회원 27명의 휴대전화로 “김○○ 지사, 이후보 지지 안○○ 과장님께 약속, 적극홍보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부터 2009.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문자메시지 발송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544통을 별지 수신자명단에 기재된 ○○대학교 동문 총 235명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위 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8. 17. 선고 2009고합46 판결 참조)

○ 판례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101 판결 참조)

○ 판례 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감은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위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위와 같은 연수업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위 법률과 그 시행령, ○○○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도 지역의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들에 대한 연수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도지회 지회장은 매년 연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실시한 후 연수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수료자 명단을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학원은 1차 불참 시 시정명령, 2차 불참 시 교습정지, 3차 불참 시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도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자로서 2009. 4. 8. 실시 ○○○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2009. 4. 3.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시 ☆☆☆동 주택전시관에서 ☆☆☆시 지역 학원장 등 약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연수회에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도지회 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인사말과 지회장 교육을 하면서, 위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율이 15% 내외이고 100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내 학원장, 기사, 배우자 모두 투표한다면 16만 8,000표 정도 되고 40%만 투표해도 10만표가 될 것이다. 40만표만 나오면 당선권이다. 방과 후 보충수업에 대해 김○○ 후보와 학원연합회가 공약을 했다. 학교 보충수업도 하고 방과 후 보충수업도 하되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선거법이 있어 누구를 찍어 달라고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찍어야 한다. 1년 2개월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학원연합회 임원 4명 중 3명이 김○○ 후보 연설원으로 등록되었다. 오늘 연수회에서 학원연합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보아야 하는데 김○○ 후보의 연설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회를 볼 수 없다. 우리 학원관계자가 힘을 모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우리가 단합해서 밀어줘야 한다. 그 사람이 내년에 또 나올 것이다. 1년 2개월 안에 그 사람과 담판을 짓겠다'고 말함으로써 직업적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도지회 내에서 지회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위 ○○도지회 구성원인 ☆☆시 지역 학원장 등에 대하여 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노2136 판결 참조).

4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장 등)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10세)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등 연설을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판례

- 선거구민의 인적 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선고 99고합851 판결 참조).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 법규요약(법 § 86)

□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제한(제86조 제1항)

○ 금지주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등

○ 금지기간 : 상 시

○ 금지내용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제한(제86조 제2항제4호)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제86조 제5항)**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금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 금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금지

※ **상시 발행·배부가 허용되는 홍보물**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 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 이하 같음)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

□ **각종 행사 참석 금지(제86조 제6항)**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광고출연 금지(제86조 제7항)**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금지기간** : 상 시

○ **금지내용**

-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입법취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참조)

③ Q&A

【Q】 후보자의 친척인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A】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친지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Q】 민간단체 등이 각종행사를 개최하면서 금품 등 후원 없이 단순히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후원명칭만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각종행사의 후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의(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합니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시 교육에 활용할 10분쯤 정도의 홍보동영상 앞부분에 1분 정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청탁과 관련한 청렴의지를 밝히고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상영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A】 교육청이 교육감이 출연한 청렴교육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소속 교직원의 직무교육 시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적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A】 점심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판 례

①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공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답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②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의 의미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주체까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벌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참조).

③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참조).

④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의 요건

- 공선법 제86조제1항제6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등의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참조).
-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결정 참조).

⑤ 제86조제2항제4호 규정 취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데 있음(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참조).

⑥ 제86조제5항의 입법목적 및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사업추진실적과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제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에 관한 한, 항상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음(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참조).

제4장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 제한·금지

1] 법규요약(법 §112~§116)

□ 기부행위의 개념(법 §112)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 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 위반죄는 성립됨.

□ 주체별 제한내용

조문	주 체	제 한 기 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 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법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112②)

○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직접 주는 행위 및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 이하 같음.)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 이하 같음)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
 - ⇒ 다른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는 달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부상을 포함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

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법 §116)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불문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2 Q&A

【Q】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직속기관장, 보좌·보조기관장(부교육감·기획관리실장 등)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지원청의 부서장인 국장·과장 등의 기부행위도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지요?

- 【A】** 교육감의 보조·보좌기관 또는 직속·하급교육행정기관의 기관장·부서장의 직무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교육감의 기부행위 또는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될 것입니다.
- 【Q】**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기부행위도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지요?
- 【A】**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교육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될 것입니다.
- ※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교육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 【Q】**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모교 또는 본인이 출마할 선거구내의 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 【A】** 입후보예정자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Q】**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할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Q】** 모교의 스승인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한 발언 없이 제자 또는 그 제자의 자녀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 【A】** 입후보예정자는 출마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Q】**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이하여 교육감의 명의로 격려물품(글, 과일, 음료 등)을 수험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달·격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교육청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교육감 명의로 격려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수험생에게 교육감이 직접

제공하거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출직공무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 체육행사 시 음료수 등 찬조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선출직공무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체육행사 시 학생, 교직원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료수 등 찬조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입후보예정자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증하는 도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Q】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학교 도서관에 자서전을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입후보예정자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자서전을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Q】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신규임용 교직원에게 본인의 교육철학이 담긴 저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 서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교육감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본청의 상근 인력은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므로 당해 직원·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축·부의금품(화환이나 화분 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감이 구·시·군교육청 교육장의 경조사에 축·조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차하급 기관의 대표자인 구·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장·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축·부의금품(화환이나 화분 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감이 공립학교 학교장 또는 교사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각급 학교는 교육청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연수원장이나 도서관장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직속 기관의 대표자인 연수원장이나 도서관장·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축·부의금품(화환이나 화분 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감(교육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적용되는지요?

【A】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서 교육감이 직접 시상할 수 있는지요?

【A】 교육감이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행사’라 함은 해당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를 말하므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 행사(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함)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백일장, 대학생 음악콩쿠르, 주부대상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음.

※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보아 무방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Q】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매년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상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A】 현직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선거구 밖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민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퇴직 교직원이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교육감(교육장)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장을 주는 경우에도 부상이 제한되는지요?

【A】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등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 시상하는 것은 금지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공무원 포상을 제외한 각종 시상 시 부상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음.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교육감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Q】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경우 당해 학교 졸업식 또는 각종 행사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지요?

【A】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상장을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Q】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차원의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량을 지원받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의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준공식에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수를 제공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준공식(개소·이전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은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인지는 그 제공대상 기관, 단체의 규모, 관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

【Q】 교육청에서 교육현장의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과 학교별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찬 또는 만찬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교육청이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청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참고

【Q】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계획이 있는 자의 배우자가 지역주민 체육대회에서 당첨된 경품을 경로당에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의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Q】** 선거철에 교육감이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교직원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음)의 경조사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개인 사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A】** 교육감이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Q】**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계획이 있는 자가 친부의 장례를 마치고,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회원으로 참석하여 답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친부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에게 통상적인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에 질문내용과 같이 모임 회원들에게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Q】**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의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등을 주최함에 있어 참여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 【A】**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Q】**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 있는 자가 모교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매년 졸업식 때마다 수년간 축하 화환을 협찬해 오고 있는 경우 지방선거 출마 시 선거법에 저촉되어 그 동안 보내던 화환을 보낼 수 없는지요?
-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모교의 졸업식에 축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사례

가. 축·부의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
- 공익재단이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학습지도·예능교육 등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7. 12. 27. 선고 95노657 판결 참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교통편의 · 식사 · 다과 · 음료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 · 떡 · 김밥 · 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관계시식 ·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과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 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구호·의연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베품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화환·화분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 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기념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이 경우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 실시행위는 무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 축제·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아. 무료민원상담 등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4 판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노○○은 2010. 2. 11. 19:00경 대구 달서구 □□동에 있는 ‘☆☆복어’ 식당에서 ‘2010년 3월에 있을 ◇◇산악회 시산제 참석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백○○ 등 13명의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시가 280,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면서 2010. 6. 2. 실시하는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를 불러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산악회 고문으로 현재 ◎◎교육청 교육장인데, 나중에 교육감선거에 출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이○○는 “◎◎교육청 교육장인데, 나중에 교육감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노○○은 ◎◎광역시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적용법조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현 같은 법 제49조), 공선법 제115조 및 제254조제2항

※ 대구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264 판결 시 위법인정

② 교육감재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의 핵심간부, 지지자, 교육청 간부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당선 1주년 기념 모임이 교육감에 대한 지지호소, 지지세력 규합 및 차기선거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경우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광역시 교육감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의 선거사무소에서 그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이른바 “선거대책본부장”들 중 1명으로 활동하면서 김○○의 당선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피고인과 김○○은 ○○중학교 동문 사이인데다가 피고인은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으로, 김○○은 ◎◎시체육회 유도협회 이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으므로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또한 이른바 “☆☆회”는 김○○이 위와 같이 ◎◎광역시 교육감재선거에 당선된 이후인 2008. 8. 무렵 김○○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지지하는 선거인들 22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데, 그 명칭은 김○○이 위와 같이 교육감에 당선된 날인 “19일”을 따서 “☆☆회”로 정하였으며 회장 등 임원을 두지 않았고 매월 19일 일부 회원들이 모여

화합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회”의 구성원 이○○, 김△△ 등은 김○○이 교육감에 당선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08. 12. 19.이 다가오니 재선거 당시 김○○을 위한 선거운동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모아 축하하는 자리(이하 “1주년 기념 모임”이라고 약칭)를 2008. 12. 19. 12:00경 ○○군 ○○읍에 있는 “◇◇매운탕”식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김○○에게도 참석을 부탁하였고 김○○도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이○○, 김△△ 등의 “☆☆회”회원, “☆☆회”회원은 아니지만 김○○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였거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김○○ 및 ○○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청 교육장, ▽▽교육청 교육장 등 모두 70여 명은 2008. 12. 19. 12:00경 ○○군 ○○읍에 있는 “◇◇매운탕”식당에 모여 1주년 기념 모임을 열었는데, 김△△은 2008. 12. 19. 12:30경 그 식당에 김○○ 및 ○○광역시 교육청 간부 등이 도착하자 1주년 기념 모임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이 2007. 12. 19. ○○시의 첫 주민직선제 제1기 교육감이 선출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육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과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1주년에 즈음하여 축하의 연을 갖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개식선언을 한 후, 축하케이크 절단, 김○○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피고인, 조직국장 등 선거사무소 핵심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인사말, 건배제의 등을 이어 나갔고, 김○○은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1주년 기념 모임 참석자들에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 옛날 그 선거운동을 하던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염원에 좀 화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이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 ○○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언론에서 수능성적,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이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거기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어 ○○광역시 교육청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김○○의 발언에 화답하여 전 ★★고등학교 교장 백○○은 “○○시민들도 김○○ 교육감을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 밀어주시면 앞으로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축사를 하는 등으로 1주년 기념 모임을

실질적으로 김○○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다가오는 2010. 6. 2. 교육감 선거에서 김○○의 재선에 대비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위와 같이 김△△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된 다음, 1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6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먹고 마셨는데, 식사대금 가운데 13만원은 일부 참석자가 각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지만 나머지 50만원은 피고인이 출연하여 식사대금으로 쓰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 실시되는 ○○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김○○을 위하여 1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한 선거인 70여 명에게 482,000원(500,000원 - 김○○과 피고인의 몫 18,000원(630,000원 ÷ 70명 × 2명))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 적용법조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현 같은 법 제49조), 공선법 제115조

※ 부산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671 판결 시 위법인정

③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제자, 친지, 친구 등 36명에게 자신의 저서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지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서를 배부하였으며,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 대부분이 교육계 종사자로서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 등을 들어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제공행위가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 12. 17. 실시되는 □□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실제 출마하였고, 이 사건 책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당시 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을 무상으로 교부한 36명은 모두 □□에 거주하거나 □□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 상당수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제자, 친지, 지인 등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이력,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광역시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책의 발송자 명의를 출판업자인 이○○으로 하여 자신을 숨기려하였고, 이○○에게도 거짓진술을 부탁하여 이○○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책을 발송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을 증정본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교부 사실을 극구 은폐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책의 수령자들이 피고인의 제자, 친지, 지인 등이라는 점만으로 달리 그러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대학교 교수로서 2004년 및 2006년 2회에 걸쳐서 □□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결선투표에서 낙선하였고, 교육감선거에서 전체 선거구민을 상대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을 출판하기로 한 후, 2007. 8. 20.경 ‘저서○○’라는 책을 30,000부 출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에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을 비롯하여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총 36명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저서○○’를 무상으로 배부함으로써 2008. 12. 17.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하였다.

※ 대전고등법원(2009. 4. 29. 선고 2009노10 판결) 및 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도4334 판결) 위법 인정

④ 피고인은 □□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2009. 4. 29. 실시된 □□ 교육감보궐 선거 당선자인 김○○과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서, 2009. 3. 26. 14:00경 △△시 △△동에서 개최된 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을 많이 참석시켜 김○○을 지지하게 하여 위 선거에서 김○○을 당선되게 할 의도로, 2009. 3. 26. 11:30경 □□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서점 앞길에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거주 선거구민인 이○○ 등 5명을 승합차에 태워 위 □□서점 앞길에서 무상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130,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날 12:00경 ○○시 소재 식당에서 위 이○○ 등에게 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합계 1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김○○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10. 1. 선고 2009고합78 판결 참조).

제5장 교직원의 정치활동

1. 정당 가입 금지

① 법규요약(정당법 § 22)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이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말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Q&A

【Q】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A】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공무원이 아닌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A】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직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정당법」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기간제교사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A】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이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서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교원도 그 근무기간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및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 직종별 당원자격 및 선거운동 가능여부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원자격	선거운동 가능여부	비 고
국·공립학교 교직원(공무원)	×	×	
사립학교 교원	×	×	
사립학교 직원	○	○	
기간제교원	×	×	
스포츠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	○	○	

【Q】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아래의 ④ ①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이 되기 전 정당에 가입한 상황에서 정당을 탈퇴하지 않은 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처벌을 받는지와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반드시 정당을 탈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의 ④ ③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의 당원인 자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된 때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당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헌·당규 등에 따라 당원명부의 기재 말소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입당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Q】 교사가 정당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있어 경선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교사는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대통령선거 때 보면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당내경선의 선거인은 반드시 당해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당해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4 판례 및 헌재결정

①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공무원은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권주체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더욱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적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까닭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즉,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특히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참조).

②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참조).

③ 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법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참조).

2. 후원회 가입 금지

① 법규요약(정치자금법 § 3, § 8)

- 후원회 :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
 -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 '1. 정당 가입 금지' 참조

2 Q&A

- 【Q】**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나요?
- 【A】** 「정치자금법」 제8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특정 후보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Q】**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와 그 취지를 같이합니다.
- 【Q】** 교육감선거에 있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교직원이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교직원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의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 질 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2.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2005. 11. 7. 회답).

- 【Q】** 교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에게 금품을 유상대여 할 수 있나요?
- 【A】** 교직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후보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동창회보에 후원회 금품모집의 고지목적 범위를 넘어 필요이상으로 자주 게재하거나 후원회지정권자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창회보에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에 따라 광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후보자후원회 또는 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행위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각출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4 판례

①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배된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청원경찰법」의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요구해 오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의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참조).

②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약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위협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대통령선거 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의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제6장 기타 학생 교육 등 관련 주의사항

1. 학생 교육 관련

1] Q&A

【Q】 교원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요 정당의 이념이나 연혁을 설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교육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주요 정당의 이념이나 연혁을 객관적으로 비교·설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Q】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선거구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1일 교사 등)를 할 수 있나요?

【A】 교육의 일환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해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체험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A】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학교의 계획 하에 학생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체험행사시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기부행위(경품, 식사 등)를 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주요 정당의 이념이나 연혁을 객관적으로 비교·설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하는 행위
-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강연주제를 선정하고 초청을 받은 정치인이 단순히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게 하거나, 강의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

2. 각종 행사 등 관련

1 Q&A

【Q】 각급 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제한되나요?

【A】 「교육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는 교육청의 차하급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Q】 학교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와 무관하게 다른 참석자와 같이 내빈으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이나 활동상황을 상당수 소개하는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축사·인사말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선거운동용 복장(어깨띠, 표지물 포함)을 착용한 (예비)후보자를 다수의 대상으로 소개하거나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Q】 ○○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주최, ○○시 후원으로 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학교운영위원장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학교운영위원인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진행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자신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

【Q】 본교 졸업생인 입후보예정자가 본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나요?

【A】 입후보예정자가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이나 강의내용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출직공무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 체육행사시 음료수 등 찬조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선출직공무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녀의 학교 체육행사시 음료수 등 찬조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기부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기부행위 제한·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직 지역구국회의원이 관내 중·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졸업식에 사용될 축하 영상메시지를 제작하여 그 국회의원의 졸업식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메시지를 학교 졸업식에서 상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학교의 요청을 받은 지역구국회의원이 의례적인 내용의 졸업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어 졸업식에서 상영하게 하는 것은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Q】 각종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 이후 예비후보자가 학부모가 참석하는 교내 행사에 방문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 경우 행사의 평온함을 위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요?

【A】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금지 장소는 아니므로 예비후보자가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직원들의 업무공간인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특정 예비후보자만 제한하는 등 예비후보자간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각급 학교 등의 행사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당해 행사에 관하여 언론보도의 가치가 있는 사안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부각시키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 본교의 동문회가 선거기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선거기간에 동문 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A】 선거와 무관하게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학교에서 연초를 맞이하여 소식지를 발간할 때에 입후보예정자인 학교운영위원장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학교 소식지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소속 학교의 학부모 외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교육청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유공 민간인에게 상장(부상 제외)이나 통상적인 상패를 수여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행사 진행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
-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넘어서 자신의 업적 및 공약 등을 홍보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 축제·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3 판례

○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소개 및 지지·지원의 당부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국회의원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1992. 10. 14. 선고 92노533 판결 참조)

3. SNS 및 인터넷 활용 관련

1 Q&A

【Q】 교직원이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 SNS(Facebook, 트위터, 밴드, 미니홈피 등)를 통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교직원은 행위 시기에 불문하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직원의 SNS 활동 시 공직선거후보자의 활동 또는 의견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Facebook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단순히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좋아요' 등을 클릭함으로써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SNS에 전송되거나, 선거운동내용의 SNS 게재 내용을 공유, 리트윗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를 지지하는 자 등이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전송한 선거운동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직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복사·공유하여 게시·전송한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직원은 타인이 작성한 선거운동내용도 복사·공유하여 게시·전송할 수 없습니다.

【Q】 교사가 교내 각종 행사, 회의 등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행사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교직원이 단순히 각종 행사, 회의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행사 등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내용을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의 입후보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A】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동문의 동정을 알리는 다른 게시글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지호소에 이르지 않는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별도 팝업창·배너 등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지지·호소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을 것임.

2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행위
- 교직원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
- 교직원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교직원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교직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부 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

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나. 다른 지방의회·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명함·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게 대한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게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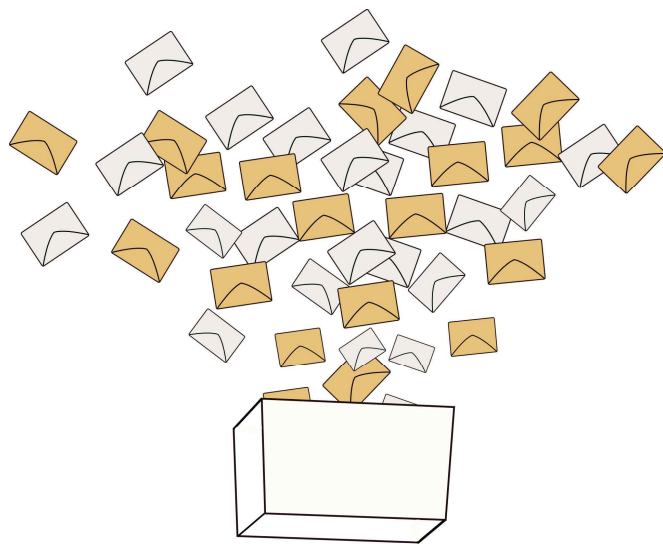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 제공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교직원 맞춤형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